

의안 번호	2007	【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】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. 9. 30.(금)
- 나. 제출자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: 2022. 9. 30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: 2022. 10. 14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안전도시국장 김규판)

### 가. 제안이유

- 2022. 12.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것으로
- 『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
- 2) 위탁의 필요성
  -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의 최초 설치 및 연장허가 시,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광고물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소요 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 필요
- 3) 위탁사무 내용
  - 광고물법 제9조, 제9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재난 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
  - 안전점검 합격 처리 후 발생하는 제반사항(인명 및 재산피해)에 대한 책임

- 4) 위탁기간: 2023. 1. 1 ~ 2025. 12. 31.(3년)
- 5) 수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
- 6) 소요예산: 없음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승인 및 동의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성천)

- 본 동의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 동의를 받아
- 기존 위탁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2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다만 소요예산이 없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큰 거 법 규

##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6. 10.] [법률 제1737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9조(광고물등의 안전점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·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(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)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 3. 29.]

##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2. 3. 8.] [대통령령 제32521호, 2022. 3. 8., 일부개정]

제38조(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)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2.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3. 건축·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2. 4. 18.] [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185호, 2022. 4. 18., 일부개정]

### 제16조(안전점검 업무 위탁)
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
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옥외광고·건축·전기분야의 기술자격(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4.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

### 제17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)

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

1. 사무실
2. 작업차량, 사다리, 절연저항계, 카메라, 망원경
3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
### 제18조(안전점검 위탁절차 등)

-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, 위탁기간, 위탁받을 자의 임무, 관계서류의 제출시기,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,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.